

형법 일부개정 법률안

(권칠승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75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7. 17.

발의자 : 권칠승 · 민병덕 · 이성윤
이병진 · 김준형 · 임호선
위성락 · 김남근 · 송옥주
강유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현법재판소는 직계혈족, 배우자, 동거친족,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재산범죄(권리행사방해죄)에 형을 면제하도록 하는 ‘친족상도례(親族相盜例)’에 대해 현법불합치결정(현법재판소 2024. 6. 27. 선고, 2020헌마468 결정)을 내렸음.

이에 직계혈족, 배우자, 동거친족,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외의 친족 간에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328조).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8조제1항 중 “配偶者間의 第323條의 罪는 그 刑을 免除한다”를 “配偶者間에 第323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 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告訴가 있어야”를 “被害者の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”로, “있다”를 “없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第328條(親族間의 犯行과 告訴)</p> <p>①直系血族, 配偶者, 동거친족, 동거가족 또는 그 配偶者間의 第323條의 罪는 그 刑을 免除 한다.</p> <p>②第1項以外의 親族間에 第323 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 다.</p> <p>③ (생 략)</p>	<p>第328條(親族間의 犯行과 告訴)</p> <p>①----- -----配偶者間에</p> <p>第323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</p> <p>②----- -----被害者의 明 示한 意思에 反하여-----없 다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